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15 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 추경호·강기윤·김용판

이종배 · 허은아 · 김도읍

송석준・정희용・조명희

이명수 · 박성중 · 김미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(OTT: Over The Top)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.

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'오징어 게임', '미스터션샤인', '킹덤'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.

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,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.

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"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"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4. "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
	자"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
	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
	을 통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
	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
	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
	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
	는 사업자를 말한다.
<u>14.</u> · <u>15.</u> (생 략)	<u>15.</u> ・ <u>16.</u> (현행과 제14호 및 제1
	5와 같음)